

부록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공통)	<p>※ 공통 용어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인력 • 수행기관 	<p>※ 공통 용어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 지역수행기관 <p>(단, 거점수행기관·지역수행기관 등 전체 수행기관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통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공통 수정사항
p.2	<p>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p> <p>1. 추진경과</p> <p>■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p>	<p>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p> <p>1. 추진경과</p> <p>○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지원지원 사업 등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 통합 실시 <p>○ ('26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규추진 및 고위험군 특화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내용 추가
p.3	<p>3. 추진방향</p> <p>■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 통합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p>3. 추진방향</p> <p>○ 예방적 돌봄을 위한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 ▶ 돌봄제공인력(생활지원사 등)을 지지체계로 잔존능력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한 신체·사회·정신건강 분야 다양한 참여형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보완
p.3	<p>■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 강화 ●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p>○ 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 ▶ 지역별 책임 권역을 설정하고, 지역 내 공공성·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지역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공공성 및 자원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보완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p> <p>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p> <p>①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기획 제공,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AI·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강화, ⑤ 생활권역별 지역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퇴원환자·은둔·우울 등 취약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p>	
p.3	<p>■ 2025년 중점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퇴원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B, 65세 및 75세 진입노인, 독거 진입(사별 등)노인,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방문 등 ● (광역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활동형·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p>● 2026년 중점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체계 연계) 통합돌봄체계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관점에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및 연계(대상자 발굴·판정·제공) ▶ (예방적 서비스 및 지원연계) 낙상 예방 교육, 우울, 정서, 인지 기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고위험군 특화지원 및 지역 내 자원(전문기관) 연계 강화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시적 입원으로 인한 퇴원환자의 장기요양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사업 개편사항 반영
p.4	<p>나. 서비스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p>나. 서비스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자격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기준) 65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우 예외승인 불가) ▶ (소득기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 (요보호기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제외기준)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⑥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예: ○○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미해당, ○○시 돌봄 SOS - 유사 중복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 기준 재구조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5	<p>▣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⑥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p> <p>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p>② 기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p> <p>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p> <p>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p> <p>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직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 ○○시 도시락배달 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p>	<p>▣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p> <p>(삭제)</p> <p>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료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지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p>② 기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p> <p>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p> <p>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p> <p>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p.5	<p>다. 서비스 제공 절차</p> <p>*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p>	<p>다. 서비스 제공 절차</p> <p>※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후돌봄군·중점 돌봄군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p> <p>*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체계 도입에 따른 문구 추가
p.6	<p>라. 대상자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 본 사업 대상 <p>(신설)</p>	<p>라. 대상자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 본 사업 대상 1) 퇴원후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1) 중점돌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중략) <p>2) 일반돌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p>2) 중점돌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거동불편 등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높은 노인</u> (중략) <p>3) 일반돌봄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u>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및 일반돌봄군 정의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군</th><th>서비스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중점돌봄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td></tr> <tr> <td>일반돌봄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 </td></tr> </tbody> </table>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 (필요시) 								
	<p>※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p> <p>● 특화서비스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p.7	<p>마. 서비스 내용 (중략)</p> <p>● 직접 서비스</p> <p>① 안전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p>② 사회참여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p>③ 생활교육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p>④ 일상생활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p>마. 서비스 내용 (중략)</p> <p>▶ 직접 서비스</p> <p>① 안전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안부확인(전화, 방문, 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u> <p>② 사회참여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사회참여 활동, 자조모임 활동</u> <p>③ 생활교육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신체영역 활동, 정신영역 활동</u> <p>④ 일상생활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u>이동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분류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특화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우울, 자살방지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⑥ 특화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울·고독사·자살</u>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u>취약노인</u>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u>서비스</u> - (서비스내용) <u>사례관리(개별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u> <p>⑥ 퇴원환자 단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퇴원</u>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u>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영양 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지원 및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 내용 설명 추가 																																																										
p.8	<p>● 연계 서비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 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p>▶ 연계 서비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u>주거지원연계</u>, 건강 지원연계, <u>기타지원연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문구 수정 																																																										
p.9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분류</th> <th>중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vertical-align: top;">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td> <td rowspan="4">안전 지원</td> <td>▶ 방문 안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td> </tr> <tr> <td>▶ 전화 안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td> </tr> <tr> <td>▶ ICT 안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td> </tr> <tr> <td>사회 참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td> </tr> <tr> <td rowspan="4">생활 교육 지원</td> <td>▶ 자조모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td> </tr> <tr> <td>▶ 신체건강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td> </tr> <tr> <td>▶ 정신건강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td> </tr> <tr> <td>일상 생활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td> </tr> <tr> <td rowspan="2">연계서비스</td> <td>▶ 가사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td> </tr> <tr> <td>▶ 생활지원연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 지원	▶ 방문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생활 교육 지원	▶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신체건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연계서비스	▶ 가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생활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분류</th> <th>중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vertical-align: top;">직접 서비스</td> <td rowspan="4">안전 지원</td> <td>• 안부확인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안부확인 - 방문·안부확인 - AI·디지털·안부확인 </td> </tr> <tr> <td>• 생활안전점검 서비스</td> <td>- 생활안전점검·관리</td> </tr> <tr> <td>• 말벗 서비스</td> <td>- 지지·격려·공감</td> </tr> <tr> <td>• 정보제공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td> </tr> <tr> <td rowspan="4">사회 참여 지원</td> <td>• 사회참여 활동</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td> </tr> <tr> <td>• 자조모임 활동</td> <td>- 자조모임 활동지원</td> </tr> <tr> <td>생활 교육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영역 활동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td> </tr> <tr> <td>▶ 정신영역 활동</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td> </tr> <tr> <td rowspan="3">일상 생활 지원</td> <td>• 이동활동지원</td> <td>- 동행지원</td> </tr> <tr> <td>• 가사활동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td> </tr> <tr> <td>• 퇴원 환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일상회복) - 영양지원 - 가사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 지원	• 안부확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안부확인 - 방문·안부확인 - AI·디지털·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 서비스	- 생활안전점검·관리	• 말벗 서비스	- 지지·격려·공감	• 정보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 참여 지원	• 사회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 자조모임 활동	- 자조모임 활동지원	생활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영역 활동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 정신영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동행지원	• 가사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퇴원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일상회복) - 영양지원 - 가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분류 수정 • 특화지원 및 퇴원환자 단기지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4개 분야	안전 지원	▶ 방문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생활 교육 지원	▶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신체건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연계서비스	▶ 가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생활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 지원	• 안부확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안부확인 - 방문·안부확인 - AI·디지털·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 서비스	- 생활안전점검·관리																																																										
		• 말벗 서비스	- 지지·격려·공감																																																										
		• 정보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 참여 지원	• 사회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 자조모임 활동	- 자조모임 활동지원																																																										
		생활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영역 활동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 정신영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동행지원																																																										
		• 가사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퇴원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일상회복) - 영양지원 - 가사지원 																																																											

페이지	2025년 안내			비고															
	단기 지원	파기자)	2026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기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33%;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연계서비스</td> <td style="width: 33.33%; text-align: center; padding: 5px;">단기 지원</td> <td style="width: 33.33%; text-align: center; padding: 5px;">파기자)</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연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연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지원연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지원연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서비스 연계 </td> </tr> </table>	연계서비스	단기 지원	파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추가
연계서비스	단기 지원	파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지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서비스 연계 																	
p.10	<p>바.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의일로부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 	<p>바.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의일로부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 <u>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관련 문구 추가 															
p.11~12	<p>나. 지방자치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역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의 추진, 관리를 의미함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 시·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매년 1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도) 마련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필요한 경우 광역지원기관에 사업 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광역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노력 - 선정권자 : 시·도지사 - 위탁기간 : 2년~5년 * '23.1.1.부터 적용('23.1.1.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으로 함) <li style="text-align: center;">(종략) ● 광역지원기관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광역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및 예산 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 -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 시·군·구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략) 	<p>나. 지방자치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 <u>시·도 사업계획 수립</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u>시·도 사업계획 및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보건복지부에 제출(매년 1월 초)</u>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도) 마련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필요한 경우 광역지원기관에 사업 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광역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노력 - 선정권자 : 시·도지사 - 위탁기간 : 2년~5년 <li style="text-align: center;">(종략) ▶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 광역지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인력 등의 제반 환경 지원 ▶ 광역지원기관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시·도는 광역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및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상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중략) 	<p>관리·점검)</p> <p>▶ 시·군·구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흑서기·흑한기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중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수당 지원 관련 예시 추가
p.13~16	<p>■ 기초자치단체(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역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의 추진, 관리를 의미함 <p>●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매년 1월 중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설정)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계획을 수립 - (발굴계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통반장 등을 통해 현황조사, 조건별* 현황조사, 단전·단수 가구 방문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 노인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p>(중략)</p> <p>●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업무지원(수행기관 역할범위 조정, 안전위험, 서비스 거부자 관련 지원 등) - 위기상황(사망, 자살, 폭력, 성폭력 등) 목격 또는 피해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 수행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p>● 수행기관 관리·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예산·사업 진행 실적 점검 (중략) <p>● 자체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판단·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정하고 유사중복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안내 <p>* 예 : OO도시 도시락배달서비스-유사중복 해당/미해당, OO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유사중복 해당/미해당</p>	<p>● <u>기초자치단체(시·군·구)</u></p> <p>▶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매년 1월 중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설정) 지역 내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계획을 수립 * <u>권역 설정 변경(확대·통합·축소) 필요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정 가능</u> - (발굴계획) 통합돌봄지원체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수행기관, 통반장 등을 통해 현황조사, 조건별* 현황조사, 단전·단수 가구 방문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략) <p>▶ <u>지역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u>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역수행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인력 등의 제반 환경 지원</u> - <u>지역수행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u> <p>▶ <u>지역수행기관 관리·감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분기별 예산·사업 진행 실적 점검(상시관리·점검)</u> (중략) <p>▶ <u>지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판단·결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u>서비스별 세부제공내용의 유사중복여부</u>를 정하고 유사중복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안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지원체계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 등 결정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p> <p>※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함(다른 방식으로 협의체 운영을 대체하거나 협의체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시·군·구 담당자(책임공무원), 관할 권역 내 읍·면·동 공무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수행기관장, 복지관장, 재가 노인지원센터장, 장기요양기관장, 지역자활 센터장,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장, 자원봉사 기관장 등* * 중간관리자급의 실무자 대참 및 임명 가능 - (회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논의 ① 신규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계획, ② 지역 내 복지지원의 개발·연계, ③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이용자가 장기요양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시설입소 대신에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p>(중략)</p> <p>● 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p>(중략)</p>	<p>▶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 등 결정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p> <p>※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의 목적·취지 및 지역통합돌봄체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함(다른 방식으로 협의체 운영을 대체하거나 협의체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시·군·구 담당자(책임공무원), 관할 권역 내 읍·면·동 공무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장, 복지관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장, 장기요양기관장, 지역자활센터장,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장, 자원봉사기관장 등* * 중간관리자급의 실무자 대참 및 임명 가능 - (회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관련 주요 현안 사항 공유 및 논의 ① 신규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계획, ② 지역 내 복지지원의 개발·연계, ③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장기요양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시설입소 대신에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p>(중략)</p> <p>▶ 지역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흙서기·흙한기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업무지원(지역수행기관 역할범위 조정, 안전위협, 서비스 거부자 관련 지원 등) - 위기상황(사망, 자살, 폭력, 성폭력 등) 목격 또는 피해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지원체계 문구 추가 • 협의체 참석대상 관련 문구 보완 • 협의체 안건 관련 문구 보완 • 지방비 수당 지원 관련 예시 추가 • 역할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16	<p>■ 읍·면·동 (중략)</p> <p>●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을 활용하여 취약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발굴 **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 기관으로 연계. 단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자살예방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p>(중략)</p>	<p>● 읍·면·동</p> <p>(중략)</p> <p>▶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을 활용하여 취약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발굴 - 시·군·구 통합돌봄체계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접수 처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돌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신청을 통해 신청접수 처리 가능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명확화
p.17~18	<p>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p> <p>■ 사업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업무 지원 - 특화서비스 자문위원회 운영 - 노무 자문 지원 ●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수행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제공 및 지원 - 정서 지원(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p>■ 사업실적 및 통계관리</p> <p>■ 사업 평가 관리 및 지원</p> <p>■ 사업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p> <p>■ 사랑잇기사업 추진 등 후원금품 모집·배부</p> <p>■ 중앙모니터링센터(☎1661-2129) 운영</p> <p>■ 기타 보건복지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라. 광역지원기관 및 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역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의 추진, 관리를 의미함)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말)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p>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광역지원기관</p> <p>●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전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 사업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지원)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업무 지원, 노무 자문 지원 - (총사업자 지원) 교육 제공 및 지원, 정서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 서비스 개발·보급·관리 지원 ▶ 사업 평가 관리 및 지원 ▶ 사업 실적 및 통계관리 ▶ 사업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 사랑잇기사업 추진 등 후원금품 모집·배분 ▶ 중앙모니터링센터(☎1661-2129) 운영 ▶ 기타 보건복지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 광역지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말) ▶ 시·도 광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종사자 교육 및 관리, 제공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 지도·점검, 지역수행기관 사업 평가 지원, 노무 자문 지원, 사업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역할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관리 및 지원 - 수행인력 교육 및 관리 - 제공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 지도·점검 - 수행기관 사업 평가 지원 - 사업 관련 자료 취합 및 사업실적 관리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 컨설팅(합동, 자체, 연계) 진행 및 외부 자문 의뢰 - 실무협의회(수행기관 간담회, 솔루션 회의, 워크숍 등) 운영 - 노무 자문 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노인돌봄 관련 보호대책 및 안전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도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 연구 사업 지원 등 	<p><u>취합 및 사업실적 관리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지역수행기관 간담회, 솔루션 회의, 워크숍 등) 운영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컨설팅 진행 및 외부 자문 의뢰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협력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점검지원 등) <p>▶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 관련 보호대책 및 안전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도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 연구 사업 지원 등 	
p.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이하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역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의 추진, 관리를 의미함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매년 1월 말) ●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송영, 물리적 공간 등) 논의 등 (중략) • 안전사고, 사망, 위기예방사례 등 대상자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구, 광역지원기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 즉시 사고경위 등 보고 실시 	<p>라. 지역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이하 '지역 수행기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매년 1월 말)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종사자 채용·교육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은 종사자를 선발·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내부규정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교육훈련, 근로조건 관리, 복무감독 등 인사·노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중략)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송영, 물리적 공간 등) 논의 등 (중략) • 안전사고, 사망, 위기예방사례 등 대상자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구, 광역 및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 즉시 사고경위 등 보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역할 명확화 • 특화서비스 관련 문구 삭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종략)</p> <p>▶ 노인돌봄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수행기관 중 특정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퇴원후돌봄군 퇴원환자 단기지원 거점 수행기관 지정</p>	<p>※ <서식 제1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종략)</p> <p>▶ 노인돌봄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수행기관 중 특정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예시) 퇴원후돌봄군 퇴원환자 단기지원 거점 수행기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번호 수정 • 문구수정 																				
p.21~22	<p>【추진주체별 주요 기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주체</th><th>기능</th></tr> </thead> <tbody> <tr> <td>시·군·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td></tr> <tr> <td>읍·면·동</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td></tr> <tr> <td>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광역지원기관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td></tr> <tr> <td>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td></tr> </tbody> </table>	추진주체	기능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광역지원기관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추진주체별 주요 기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진주체</th><th>기능</th></tr> </thead> <tbody> <tr> <td>시·군·구</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지역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지역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td></tr> <tr> <td>읍·면·동</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지역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td></tr> <tr> <td>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시·도 광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td></tr> <tr> <td>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역 수행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지역종사자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td></tr> </tbody> </table>	추진주체	기능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지역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지역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지역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시·도 광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역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지역종사자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주체별 주요기능 수정사항 표 번역
추진주체	기능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광역지원기관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추진주체	기능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매년 1월 중순)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시·군·구) 마련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 지역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지역수행기관 관리·감독 • 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증복 여부 판단·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 지역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 • 시·도 광역 단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 •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역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 • 지역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지역종사자 채용·교육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 •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26	<p>【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td> </tr> </tbody> </table>	절차	내용	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p>【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종결/사후관리 (시·군·구/ 지역수행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td> </tr> </tbody> </table>	절차	내용	종결/사후관리 (시·군·구/ 지역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 주체 명확화 										
절차	내용																				
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절차	내용																				
종결/사후관리 (시·군·구/ 지역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p.27	<p>서비스 제공 절차별 용어 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비스 제공 절차</th> <th>상태</th> <th>용어</th> </tr> </thead> <tbody> <tr> <td>승인 요청</td> <td>승인 요청</td> <td>신청자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td> </tr> <tr> <td>결정</td> <td>결정 결과(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td> <td>대상자/부적격자</td> </tr> </tbody> </table>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p>서비스 제공 절차별 용어 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서비스 제공 절차</th> <th>상태</th> <th>용어</th> </tr> </thead> <tbody> <tr> <td>승인 요청</td> <td>승인 요청</td> <td>신청자 (퇴원후돌봄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td> </tr> <tr> <td>결정</td> <td>결정 결과 (퇴원/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td> <td>대상자/부적격자</td> </tr> </tbody> </table>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 (퇴원후돌봄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 (퇴원/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원후돌봄군 추가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 (퇴원후돌봄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 (퇴원/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p.28~29	<p>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 내용</p> <p>1. 서비스 대상자 선정</p> <p>가. 서비스 신청 (종략)</p> <p>■ 서비스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증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p>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 내용</p> <p>1. 서비스 대상자 선정</p> <p>※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p> <p>가. 서비스 신청 (종략)</p> <p>○ 서비스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기준) 65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우 예외 승인 불가) (소득기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요보호기준) 독거·소홀·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제외기준) 유사증복사업 자격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⑥까지의 유사증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예: ○○시 도시락 배달서비스 - 유사증복 미해당, ○○시 돌봄 SOS - 유사증복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돌봄체계 도입에 따른 문구 추가 서비스 신청자격 재구조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중략)</p> <p>⑥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p> <p>*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p>	<p>▶ (연령기준) 65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우 예외 승인 불가)</p> <p>▣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p> <p>(중략)</p> <p>⑥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p>	
p.30	<p>■ 서비스 신청권자 (중략)</p> <p>●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p>	<p>● 서비스 신청권자 (중략)</p> <p>▶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에 따라, 통합돌봄 사전조사지 등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에 통합돌봄 신청을 안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체계 관련 내용 추가
p.30	<p>■ 신청 방법 (중략)</p> <p>●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p> <p>- 부득이한 시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p> <p>*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p> <p>**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중략)</p>	<p>● 신청 방법 (중략)</p> <p>▶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p> <p>- 부득이한 시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p> <p>*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명확화
p.30	<p>■ 제출서류</p> <p>● 본인신청</p> <p>-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p> <p>- 신청자의 신분증</p> <p>*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p>	<p>● 제출서류</p> <p>▶ 본인신청</p> <p>-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p> <p>- 신청자의 신분증</p> <p>*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서류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제1호〉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p.34	<p>다. 대상자 선정조사 (중략)</p> <p>■ 조사방법 및 안내사항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❷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2인 동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지무료원, 지원인력(노인일자리 인력 등))과 동행하여 방문 * 정신과적 문제 또는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함 	<p>다. 대상자 선정조사 (중략)</p> <p>■ 조사방법 및 안내사항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2인 동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지무료원, 지원인력(노인일자리 인력 등))과 동행하며, 서비스이용자격이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선정조사를 중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명확화
p.35	<p>■ 선정조사 시 유의사항 (중략)</p>	<p>❶ 선정조사 시 유의사항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서비스 욕구와 우선순위, 환경 및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상담 및 심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영역 「우울감(M-1)」 문항에 '예 심각(4)' 이거나, 「자살생각(M-5)」 문항에 '예 자주(4)'로 응답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조사 및 상담 관련 문구 추가
p.35~36	<p>■ 대상자 선정기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❸ 중점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p>❶ 대상자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퇴원후돌봄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는 생략 * 통합돌봄판정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후 돌봄군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 ▶ <u>중점돌봄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의뢰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는 생략,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내용 추가 •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선정된 대상 관련 내용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비고					
	대상자 구분	영역	점수			대상자 구분	영역	점수				
p.37			상	중	하			상	중	하	• 선정조사 점수표 수정	
중점 돌봄군	사회영역	○	○		중점 돌봄군	사회영역	○	○				
	신체영역	●				신체영역	●					
	정신영역	○	○			정신영역	○	○				
일반 돌봄군	사회영역	●	●		일반 돌봄군	사회영역	●	●				
	신체영역		○			신체영역	○	○				
	정신영역	○	○			정신영역	○	○				
	* ●에 반드시 해당하면서 ○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 ●에 반드시 해당하면서 ○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p.38~39	라. 서비스 상담 ■ 상담방법 및 유의사항 ● 주요 욕구 파악 (중략)			라. 서비스 상담 ● 상담방법 및 유의사항 ▶ 주요 욕구 파악 (중략)			(중략) -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우선순위, 환경 및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상담 및 심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정신영역 [우울감(M-1)] 문항에 '예 심각 (4)'이나, [자살생각(M-5)] 문항에 '예 자주(4)'로 응답한 경우 등 (중략)			• 심화조사 관련 내용 추가		
	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략)			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중략)			(중략) ● 서비스 제공계획(이하 '계획') 수립 대상 ▶ 대상자 서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는 자 (중략)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작성 -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생활지원사의 근무현황 및 가능기능한 지원을 감안하여 적절한 서비스 내용을 정함. 예를 들어 ○○어르신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하여 식사관리(일상생활서비스) 또는 도시락 제공(연계 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도 있음 - 수행인력(생활지원사·지원인력)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소요예상시간, 기준 담당 대상자 수 및 서비스 내용, 방법, 제공빈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V.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매뉴얼)」 참고			• 퇴원후돌봄군 추가 •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대상자 군 분류에 따라 달라짐. 또한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 돌봄군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돌봄군에게는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재사정을 통해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지원 영역의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차원의 것으로 접근해야 함.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임. 예를 들어, 식사관리 지원이란 수행인력이 식사를 준비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식사관리를 함께 하며 노인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돋는 것을 의미함 <p style="text-align: center;">【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군</th><th>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th></tr> </thead> <tbody> <tr> <td>중점돌봄군</td><td>•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td></tr> <tr> <td>일반돌봄군</td><td>•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td></tr> </tbody> </table> <p>*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 조정 가능</p> <p>* 사후관리 대상은 p.?, 특화서비스 대상은 VI. 특화 서비스 참고</p>	대상자 군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특화 지원서비스 제공을 계획에 포함</u> <p style="text-align: center;">【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군</th><th>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th></tr> </thead> <tbody> <tr> <td>퇴원후돌봄군</td><td>•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td></tr> <tr> <td>중점돌봄군</td><td>•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td></tr> <tr> <td>일반돌봄군</td><td>•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td></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이용자의 돌봄필요도, 지역수행기관의 제공여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지역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 가능</p>	대상자 군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추가 • 문구수정
대상자 군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																
대상자 군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특화 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연계 서비스(필요시)+특화서비스(필요시)																
p.40	<p>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예시</p> <p>●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선정조사 및 상담결과에 따른 욕구수준, 신체·정신건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간 계획을 수립</p> <p>* (중점돌봄시간 확대) 병원 퇴원환자 등 거동이 불편 하여 스스로 식사, 청소 등 ADL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20시간 이상으로 제공. 단,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 조정 가능 (예시)</p>	<p>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예시</p> <p>•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선정조사 및 상담결과에 따른 욕구수준, 신체·정신건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간 계획을 수립</p> <p>*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청소 등 ADL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20 시간 이상으로 제공. 단,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 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지역수행 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 조정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대분류	군분류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비고	대분류	군분류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비고				
	~16시간	일반 돌봄군	6h	2h	2h			~16시간	일반 돌봄군	6h	2h	2h			• 예시 일부 수정			
	16시간~ 20시간	중점 돌봄군	6h	2h	4h	6h		~20시간	중점 돌봄군	6h	2h	4h	6h					
	20시간~ 40시간	중점 돌봄군	6h		4h	10h	퇴원 환자	~40시간	중점 돌봄군	6h		4h	10h	거동 불편				
	(중략)							(중략)										
	〈예시〉							〈예시〉										
	서비스명		제공빈도					서비스명		제공빈도								
	대분류	중분류	제공주기	제공시간	대분류	중분류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 안전지원	주 3회	1회당 / 10분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주 3회	1회당 / 10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주 1~2회	1회당 / 60분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활동	주 1~2회	1회당 / 60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생활교육 서비스	정신건강분야	주 1~3회	1회당 / 20분	생활교육 지원	정신영역 활동	주 1~3회	1회당 / 20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사지원	주 2~3회	1회당 / 30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	주 2~3회	1회당 / 30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주기	제공시간				
	(중략)							(중략)										
	〈예시〉							〈예시〉										
	서비스명			내용			제공 방법		서비스명			내용			제공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안전 지원 서비스	방문 안전 지원	안전·안부 확인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방문	안전 지원	안부 확인 서비스	방문 안부 확인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방문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사회 참여 서비스	자조 모임	자조 모임	대상자들이 센터에 모여 자조모임을 진행하는 경우	내방	사회 참여 지원	자조 모임 활동 지원	자조 모임 활동 지원	대상자들이 센터에 모여 자조모임을 진행하는 경우	내방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기타 서비스 연계	기타 서비스 연계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내내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의뢰한 경우	기타	연계서비스	기타 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연계	내내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의뢰한 경우	기타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중략)							(중략)										
p.41	<p>●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일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함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승인을 거칠 수 있음 							<p>▶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일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함 * 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 - 승인 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승인을 거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내용 추가 • 승인 전 서비스 제공 관련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간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외 간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p>▣ 승인 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u>돌봄통합지원체계에 따라 토원후돌봄군으로 의뢰된 대상자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사후 승인 절차로 처리가능</u> - 그 외 간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p.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수행인력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인력의 거주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행인력을 적절히 배정하되, 수행 인력별 담당 대상자를 평균 15명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2025년 사업량 기준 1인 평균 15명) * 예 : 건강운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건강운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연결 (중략) ● 〈서식 제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특화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 * 단, 특화서비스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사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사의 거주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생활지원사를 적절히 배정하되, 수행인력별 담당 대상자를 평균 15명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2026년 사업량 기준) - 지역수행기관은 지역여건, 이동거리,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등의 돌봄제공업무부담정도,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중략) ▶ 〈서식 제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도 기준 반영 • 서식 번호 수정 • 특화서비스 관련 문구 삭제
p.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실무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서비스 제공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주요 서비스 욕구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정한지, 수행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 개발 또는 연계·의뢰 등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실무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서비스 제공시간, 제공내용 등 제공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주요 서비스 욕구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정한지, 지역수행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 개발 또는 연계·의뢰 등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p.43	<p>바. 승인 요청</p> <p>(중략)</p> <p>■ 요청 내용</p> <p>●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p>	<p>바. 승인 요청</p> <p>(중략)</p> <p>● 요청 내용</p> <p>▶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p>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생략함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 계획 생략함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p>(중략)</p>	• 문구 수정
p.43~44	<p>■ 심의 요청 대상(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p> <p>(중략)</p> <p>⑤ 전담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p> <p>⑥ 재사정 결과 대상자 군이 변경되는 경우(중점 돌봄군 ⇌ 일반돌봄군)</p> <p>⑦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p> <p>(중략)</p>	<p>● 심의 요청 대상(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p> <p>(중략)</p> <p>⑤ 전담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p> <p>(삭제)</p> <p>⑥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p> <p>(중략)</p>	• 심의 요청 대상 기준 수정(대상자 군변경 내용 삭제)
p.46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p> <p>●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p>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p> <p>▶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p> <p>▶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퇴원후 돌봄군 및 중점돌봄군 중 통합돌봄을 통해 자격이 결정된 경우)의 경우에는 통합돌봄 내 자격판정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아 협의체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p>	• 통합돌봄체계 도입에 따른 심의 대상 기준 보완
p.46	<p>■ 결정 내용</p> <p>● 대상자 선정조사 :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p> <p>(중략)</p>	<p>● 결정 내용</p> <p>▶ 대상자 선정조사 : <u>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u></p> <p>*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퇴원 후돌봄군 및 중점돌봄군 중 통합돌봄을 통해 자격이 결정된 경우)의 경우에는 통합돌봄 내 자격판정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아 협의체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p> <p>(중략)</p>	• 퇴원후돌봄군 추가 • 통합돌봄판정체계 관련 내용 추가
p.47	<p>아. 결정 통지</p> <p>(중략)</p> <p>■ 통지방법 및 내용 등</p> <p>●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심의결과(적격자(이용 대기자 포함)/부적격자)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 제6-1호)</p> <p>(중략)</p>	<p>아. 결정 통지</p> <p>(중략)</p> <p>● 통지방법 및 내용 등</p> <p>▶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심의결과(적격자(이용 대기자 포함)/부적격자)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u>서식 제8-1호</u>)</p> <p>(중략)</p>	• 서식 번호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48	<p>■ 안내 방법 및 내용</p> <p>●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는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 생활지원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서식 제7-3호)를 교부·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수령함(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중략) <p>※ 재사정 시 〈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재발급 필요</p> <p>● 이용대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사업량 초과 등)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서식 제7-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안내서) (중략) - 5%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 권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접수를 보류하도록 요청함 (중략) 	<p>● 안내 방법 및 내용</p> <p>▶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는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서식 제9-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 생활지원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서식 제9-3호~제9-5호)를 교부·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수령함(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중략) <p>※ 재사정 시 〈서식 제9-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재발급 필요</p> <p>▶ 이용대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사업량 초과 등)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서식 제9-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안내서) (중략) - 5%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 권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접수를 보류하도록 요청함 <p>* <u>심의결과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는 대상자는 이용대기자로 분류하지 않음</u>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기자 기준 명확화
p.50	1.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판정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후돌봄군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체계 추가
p.50	<p>■ 수행주체</p> <p>●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등)</p>	<p>● 수행주체</p> <p>▶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p> <p>* 서비스 제공 시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 지원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주체 명확화
p.50	<p>■ 제공기간</p> <p>●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p>	<p>● 제공기간</p> <p>▶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p> <p>* 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내용 추가
p.50	<p>■ 서비스 제공 (중략)</p>	<p>● 서비스 제공 (중략)</p>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퇴원후돌봄군에게 제공되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거점수행기관의 별도 돌봄제공인력을 통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관련 내용 추가 				
p.51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사례</p> <p>※ 상세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참고</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안전 지원 <p>[안전지원]–[방문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건강 분야]–[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특화 지원 서비스 <p>[특화지원서비스]–[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취약노인에게 특화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서돌봄 지원 • (서비스 목적)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군 통합 사례관리망 실현 • (서비스 대상) 우울증, 치매 의심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심화조사(우울 선별도구 (PHQ-9(한글판 우울선별도구)), 치매 선별검사(MMSE-DS(간이정신상태검사))) ② 정서돌봄 서비스 제공(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td> </tr> </table>	안전 지원 <p>[안전지원]–[방문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건강 분야]–[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특화 지원 서비스 <p>[특화지원서비스]–[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취약노인에게 특화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서돌봄 지원 • (서비스 목적)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군 통합 사례관리망 실현 • (서비스 대상) 우울증, 치매 의심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심화조사(우울 선별도구 (PHQ-9(한글판 우울선별도구)), 치매 선별검사(MMSE-DS(간이정신상태검사))) ② 정서돌봄 서비스 제공(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안전 지원 <p>[안전지원]–[방문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건강 분야]–[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특화 지원 서비스 <p>[특화지원서비스]–[사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치매가 의심되는 취약노인에게 특화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서돌봄 지원 • (서비스 목적)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군 통합 사례관리망 실현 • (서비스 대상) 우울증, 치매 의심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심화조사(우울 선별도구 (PHQ-9(한글판 우울선별도구)), 치매 선별검사(MMSE-DS(간이정신상태검사))) ② 정서돌봄 서비스 제공(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치료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사례</p> <p>※ 상세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참고</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안전 지원 <p>[안전지원]–[안부확인]–[방문 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상태(낙상 예방 실내 환경)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 상태(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점검표, 질병관리청)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참여 활동]–[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영역 활동]–[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td> <td></td></tr> </table>	안전 지원 <p>[안전지원]–[안부확인]–[방문 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상태(낙상 예방 실내 환경)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 상태(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점검표, 질병관리청)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참여 활동]–[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영역 활동]–[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명 수정 및 특화지원서비스 사례 추가 • 낙상예방 관련 문구추가
안전 지원 <p>[안전지원]–[안부확인]–[방문 안부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상태(낙상 예방 실내 환경) 등을 점검 • (서비스 목적) 이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서비스 대상) 안전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정서상태, 거주지 실내 환경 상태(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점검표, 질병관리청) 등 이용자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안부확인 	사회 참여 <p>[사회참여]–[사회참여 활동]–[생생 교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가복지시설은 방학기간 중·고등 학교 빙교실(정보화교실)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 • (서비스 목적)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여 디지털 격차 축소 • (서비스 대상)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이용자 00명 • (서비스 내용) ① 손쉬운 사용법, ②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방법 	생활 교육 <p>[생활교육]–[정신영역 활동]–[인지활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종합복지관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소근육 활용에 좋은 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00명 • (서비스 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는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 생활지원사는 강사의 교육진행에 따라 이용자 참여 보조 (생활지원사 사전 교육 진행) • (서비스 내용) ① 색깔 인지, ② 꽃, 나비 접기, ③ 다양하게 꾸미기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52	<p>〈지원인력〉</p> <p>● 지원인력은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업무와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단독수행) 구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p> <p>- 특이사항 등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p> <p>(중략)</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업무 범위 】</p> <p>(표 중략)</p>	<p>〈지원인력〉</p> <p>▶ 지원인력은 돌봄제공인력과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업무와 돌봄제공인력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 구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p> <p>* 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 가능한 업무는 지원 인력의 교육·훈련, 업무숙련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p> <p>- 특이사항 등에 대해 돌봄제공인력과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돌봄제공인력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p> <p>(중략)</p> <p>(표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단기집중 서비스 제공인력을 고려한 포괄적 문구 조정 • 지원인력 업무 범위 삭제
p.53~54	<p>■ 이용자 사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지</p> <p>(중략)</p> <p>● 서비스 중지자 관리 방법</p> <p>(중략)</p> <p>- 보고받은 전담사회복지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중지 신청서'를 징구</p> <p>(중략)</p> <p>-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하되 대상자 자격은 유지(미이용자)되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p> <p>-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동안 대상자의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p>	<p>● 이용자 사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지</p> <p>(중략)</p> <p>▶ 서비스 중지자 관리 방법</p> <p>(중략)</p> <p>- 보고받은 전담사회복지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중지 신청서'를 징구</p> <p>(중략)</p> <p>-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기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하되 대상자 자격은 유지(미이용자)되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p> <p>-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동안 대상자의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p> <p>* 병원 입원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대상자의 경우 퇴원 이후 돌봄 연계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연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 퇴원환자 연계 관련 문구 추가
p.54	<p>■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 의뢰</p> <p>(중략)</p> <p>● 의뢰대상</p> <p>- 중점돌봄군 등 서비스 이용자 중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 신청을 의뢰할 수 있음</p> <p>(중략)</p>	<p>●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 의뢰</p> <p>(중략)</p> <p>▶ 의뢰대상</p> <p>- 서비스 이용자 중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 신청을 의뢰할 수 있음</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삭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55	<p>3. 재사정 (종략)</p> <p>■ 재사정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점검을 위해 연 1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점검기록지)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재사정 대체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재사정 실시 <p>(종략)</p>	<p>3. 재사정 (종략)</p> <p>● 재사정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점검을 위해 연 1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는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재사정 대체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재사정 실시 <p>*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태,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재사정을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수행 주체 및 방법은 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음(생활지원사 서비스 제공기록 점검, 유선·방문 모니터링 등)</p>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정 대체 관련 기준 완화
p.56	<p>■ 재사정 방법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정이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계획 등이 결정 되기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서비스 제공기간이 2024.12.31.까지 (서비스 시작일 : 2024.1.1.)로 재사정을 2024년 12월 내 완료하여야 하나 절차가 지연되어 서비스 지속 제공여부 등이 2025.1.15.에 결정될 경우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서비스 지속 제공 	<p>● 재사정 방법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정 절차가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제공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서비스 제공기간이 2025.12.31.까지 (서비스 시작일 : 2025.1.1.)로 재사정을 2025년 12월 내 완료하여야 하나 절차가 지연되어 서비스 지속 제공여부 등이 2026.1.15.에 결정될 경우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서비스 지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 연도 수정
p.56	<p>■ 시·군·구 심의 대상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군 변경 없이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p>● 시·군·구 심의 대상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군 변경,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변경 (협의체 심의 대상에 비해당)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생략 기준 수정 (군 변경 해당)
p.57	<p>4. 서비스 종결</p> <p>■ 수행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 	<p>4. 서비스 종결</p> <p>● 수행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주체 명확화
p.57~58	<p>■ 종결 대상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으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p>● 종결 대상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과도한 서비스 요구, 지속적인 폭언, 인격모독, 종사자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안전을 위한 심의생략 기준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p> <p>※ 단, 수행인력의 안전이 위협되어 서비스 종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생략 가능</p>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청(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등) (〈서식 제10-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신청서 징구) -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나이, 소득자격 및 유사 중복 사업)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p><u>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u></p> <p>▶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청(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등) (〈서식 제12-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신청서 징구) -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나이, 소득자격 및 유사 중복 사업)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폭력, 성추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58	<p>■ 종결 절차</p> <p>(종략)</p> <p>* 심의 서류 : 〈서식 제10-2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결 처리서</p> <p>● 시·군·구는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에 대해 종결 결정 서면 통지(서식 제6-3호)</p>	<p>● 종결 절차</p> <p>(종략)</p> <p>* 심의 서류 : 〈서식 제12-2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결 처리서</p> <p>▶ 시·군·구는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에 대해 종결 결정 서면 통지(서식 제8-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58~59	<p>■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 제한</p> <p>● 서비스 이용제한</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p>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은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최종 심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 - 수행기관은 시·군·구 결정에 따라 필요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 	<p>●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격(신청) 제한</p> <p>※ 단,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폭력, 성추행 등)에는 아래의 단계적 조치 절차와 관계없이 즉시 서비스 종결 및 이용 제한이 가능함</p> <p>▶ 서비스 이용자격(신청)제한</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신청) 사유</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신청) 기간</p> <p>(종략)</p> <p>▶ 서비스 이용제한(신청) 절차</p>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은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최종 심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제출 - 지역수행기관은 시·군·구 결정에 따라 필요시 서비스 이용제한(신청) 조치 * 서비스 이용자격(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격(신청)제한 위치 이동 (서비스 제공→종결) • 종사자 안전을 위한 문구 명확화 •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시스템 내 서비스 상태를 '서비스 종결'로 변경	맞춤돌봄시스템 내 서비스 상태를 '서비스 종결'로 변경	
p.60	<p>5. 사후관리 (중략)</p> <p>■ 사후관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 통화 실시 	<p>5. 사후관리 (중략)</p> <p>● 사후관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u>전화 통화</u>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p.61	<p>6. 이의신청 (중략)</p> <p>■ 이의신청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제12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p>6. 이의신청 (중략)</p> <p>● 이의신청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64	<p>I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가. 권역설정</p> <p>■ 시·군·구는 권역 수 및 권역별 관할 행정동 변경 등이 필요할 시 시·도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함 * 권역 변경 등은 행복e음 및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내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p>	<p>II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 선정 가. 권역설정</p> <p>● 시·군·구는 권역 수 및 권역별 관할 행정동 변경 등은 조정 가능한 사항으로 필요 시 시·도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함 * 권역 변경 등은 행복e음 및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내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는 조정된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및 추가
p.64	<p>나. 수행기관 선정 방향 (중략)</p> <p>【참고 : 기관 유형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 기관 수 및 비중('24년 기준)】</p>	<p>나. 지역수행기관 선정 방향 (중략)</p> <p>【참고 : 기관 유형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 기관 수 및 비중('25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기준 수행기관 유형 반영
p.65	<p>다. 수행기관 자격</p> <p>■ 공공성 (중략)</p> <p>(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p>다. 지역수행기관 자격</p> <p>● 공공성 (중략)</p> <p>(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삭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65	<p>다. 수행기관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선정 	<p>다. 지역수행기관 자격</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선정 * 다만, 관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더라도 관내 사무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지역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격 기준 명확화
p.68	<p>다. 수행기관 자격</p> <p>〈인력 요건〉</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인건비 미지급 	<p>다. 지역수행기관 자격</p> <p>〈인력 요건〉</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운영 예산 국비 인건비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명확화
p.68	<p>다. 수행기관 자격</p> <p>〈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 관련 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전 노인돌봄 국고보조 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p>다. 지역수행기관 자격</p> <p>〈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p> <p>(중략)</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삭제
p.68	<p>라. 수행기관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 * 자격요건, 시설·인력기준,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 노력 명시, 사업비 등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서식 제15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협약서 포함)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서식 제13호〉를 참고하고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p>라. 수행기관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은 별도지정 (중략) * 자격요건, 시설·인력기준,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 노력 명시, 사업비 등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서식 제17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협약서 포함)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서식 제15호〉를 참고하고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관련 내용 추가 • 서식 번호 수정
p.70	<p>마. 수행기관 선정</p> <p>■ 위탁계약</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위탁기간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p>마. 수행기관 선정</p> <p>○ 위탁계약</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지역수행기관(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p.72	가. 광역지원기관 자격 ■ 자격기준 (종략) (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가. 광역지원기관 자격 ● 자격기준 (종략) (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삭제)	• 문구 삭제
p.73	나. 광역지원기관 선정 ■ 위탁계약 (종략) ●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위탁기간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나. 광역지원기관 선정 ■ 위탁계약 (종략) ▶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2년~최대 5년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수행기관(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 문구 수정
p.98	IV.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나. 인력배치 (신설)	IV.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나. 인력배치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배치 <u>세부내용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u> (종략)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관련 내용 추가
p.76	■ 광역지원기관 ● 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이하 '광역전담사회복지사') - 시·도 사업량에 따라 3명~8명 배치 * 광역지원기관은 광역전담사회복지사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임 배치	● 광역지원기관 ▶ 광역지원기관 전담사회복지사(이하 '광역전담사회복지사') - 시·도 사업량에 따라 3명~8명 배치 * 광역지원기관은 광역전담사회복지사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임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선임 관련 문구 수정
p.76	■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5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인	■ 지역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 2026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인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2025년 사업량 기준 평균 25명 이용자당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1인</p> <p>※ 수행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임직을 부여할 수 있음</p>	<p>** <u>특화지원 및 퇴원환자 단기지원은 별도 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 가능</u></p> <p>*** 2025년 특화전담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운영 했던 기관의 경우 2026년 평균 사업량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p> <p>※ 지역수행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동료 슈퍼비전 등 사업 전반 운영관리), 고위험군 담당(특화·퇴원환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수당을 지급할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편에 따른 배정 기준 추가
p.76	<p>● 생활지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사업량 기준 평균 15명의 대상자당 1인 - 시·도에서 자자체의 사업의지 및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력개발 조정 가능 	<p>▶ 생활지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량에 따라 1명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사업량 기준 평균 15명(중점돌봄군 1~2명 포함)의 대상자당 1인(기관 내 일반·중점대상자 현황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 시·도에서 자자체의 사업의지 및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력 조정 가능 <p>※ 지역수행기관은 생활지원사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임생활지원사(팀내 상황 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 추가 수행)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수당을 지급할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 기준 문구 추가 • 선임 관련 문구 추가
p.77	다. 인력구성 및 주요업무	다. 인력구성 및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후돌봄군 관련 문구 추가
p.78	<p>■ 수행기관</p> <p>(중력)</p> <p>● 전담사회복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만을 담당하도록 업무 배정할 수 없음 -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중력) 	<p>● 지역수행기관</p> <p>(중력)</p> <p>▶ 전담사회복지사</p> <p>(중력)</p> <p>* 생활지원사 1명당 이용자 평균 15명 배치 (중점돌봄군 1~2명 포함) (기관 내 일반·중점 대상자 현황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p> <p>(식제)</p> <p>- 사례관리 필요대상자 상담 및 사례관리지원</p>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은둔, 우울, 인지저하 등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 관리 방안 마련 및 사례관리지원</p> <p>(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지원 문구 추가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삭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선임전담사회복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3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전담사회복지사로 지정 가능 (수행기관당 1인) - 선임전담사회복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동료 슈퍼비전 등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월 15만원)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관련 세부 기준 삭제
p.79	<p>● 생활지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소속 수행기관의 특화서비스 수행 여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음 <p>▣ 선임생활지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사 중 3년 이상 경력을 선임으로 지정 가능(생활지원사 9-10인당 1인)하며, 순번제로 지정·운영 가능(최소 6개월~1년 단위) - 선임생활지원사는 팀 내 상황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 하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7만원) 	<p>▶ 생활지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삭제
	<p>관련 Q&A</p> <p>Q1. 생활지원사 경력 3년 미만 생활지원사를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p> <p>■ 생활지원사 9~10명당 1명(인원 기준 암수)을 선임생활지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생활지원사 경력을 지정할 것을 권고함. 단, 해당 경력자가 없는 경우 시·군·구 승인하에 3년 미만의 생활지원사 경력자도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음</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관련 세부 기준 삭제
p.79	<p>●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업무 수행 시 특이사항 등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p>▶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제공인력과 동행하여 업무 수행 시 특이 사항 등에 대해 돌봄제공인력과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돌봄제공인력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단기집중 서비스 제공인력을 고려한 포괄적 문구 조정
p.80	<p>가. 사업계획 수립</p> <p>■ 시·도</p> <p>● 시·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매년 1월 초)</p>	<p>가. 사업계획 수립</p> <p>● 시·도</p> <p>▶ 시·도 사업계획 수립</p> <p>▶ 시·도 사업계획 및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보건복지부에 제출(매년 1월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명확화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81	<p>나. 사업실적 관리</p> <p>■ (광역지원기관) 사업 추진현황을 전산화된 자료로 관리</p> <p>■ (수행기관) 사업 추진현황을 전산화된 자료로 관리 (중략)</p>	<p>나. 사업실적 관리</p> <p>○ (지역수행기관) 사업 추진현황을 전산화된 자료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관리 등은 전산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식화된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사업실적관리 등은 시스템 통합·연계 예정 ▶ 이용자의 구분류에 따른 퇴원후돌봄군/중점 돌봄군/일반돌봄군별 서비스 제공인원 및 현황 관리(별도취합예정) (중략) <p>○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및 광역지원기관)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및 관할 지역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 관리 내용 명확화
p.81	<p>3.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신설)</p>	<p>3. 종사자 채용 및 관리</p> <p>※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필요한 돌봄제공인력 채용 및 관리 세부내용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관련 문구 추가
p.81	<p>가. 채용</p> <p>●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p> <p>*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p> <p>(신설)</p> <p>●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p> <p>*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p>	<p>가. 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 지역수행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 예정자에 대한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중략) <p>*** 다만, 위탁기간 종료 등에 따라 수행기관 (수탁기간)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인력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원칙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수행 기관의 고용사무로서, 관계법령 및 본 사업안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 * <u>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협동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등 문구 추가 • 고용승계 문구 추가
p.82	<p>● 채용공고 및 선발</p> <p>(중략)</p> <p>(신설)</p>	<p>▶ 채용공고 및 선발</p> <p>(중략)</p> <p>- <u>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협동지침 안내사항 적용</u></p> <p>▣ <u>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협동지침 안내사항</u></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안내사항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83	<p>● 근로계약 (종략)</p>	<p>나. 근로계약 (종략)</p> <p>*** 지역수행기관(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종료, 징계, 정책 변경·예산 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량 축소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민간위탁기아이드라인 등에 따라 고용승계 우선 원칙 - 지역수행기관은 복무점검, 모니터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다하며, 복무 점검이 위실적,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파트 별도 분리 및 문구 수정
p.84	<p>나. 근무조건</p> <p>■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종략) -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 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종략) <p>■ 수행인력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종략)</p> <p>●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행정보조 등). 단, 해당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총수는 변동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사가 이용자 매칭 없이 행정보조만 담당하는 것은 불가 (종략)</p>	<p>다. 근로 및 자격조건</p> <p>● 공동사항</p> <p>▶ 관련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기타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책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략) <p>●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총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복리후생 수당, 선임수당, 고위험 담당 수당 등 지급 가능 * 아간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p>※ 수당 지급 금액은 전년도 지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흙서기·흙한기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조건 및 복무관리 파트 통합 및 문구수정 • 복무관리 강조 • 지급수당 예시 추가 • 흙서기·흙한기 수당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86	<p>■ 급여</p> <p>● 인건비 (종략)</p>	<p>● 전담사회복지사</p> <p>▶ 자격조건 (종략)</p> <p>▶ 기본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td> <td>2,538,700원</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td> <td>2,475,4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td> <td>2,411,5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td> <td>2,366,5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td> <td>2,324,3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td> <td>2,281,800원</td> </tr> </tbody> </table> <p>▶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종략)</p> <p>▶ 복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근로기준법</u> 등 관계 법령을 의거하여 지역수행 기관 내 복무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운영 * <u>생활지원사의 근로시간 및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 마련</u> - <u>지역수행기관은 복무점검, 모니터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다하며, 복무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복무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u> - <u>복무점검허위설적,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u> * <u>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중앙 노인돌봄지원기관]', 참고)</u> <p>▶ 정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행기관 내부운영규정에 적용하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름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중앙 노인돌봄지원기관]」 참고</u> <p>● 생활지원사</p> <p>▶ 자격조건 (종략)</p>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	2,538,7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2,475,4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2,411,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2,366,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324,3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	2,281,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기준 분리 • 전담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확대 • 복무관리 강조 • 정년기준 신설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	2,538,7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2,475,4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2,411,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2,366,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324,3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	2,281,800원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 기본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본급</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생활지원사</td><td>1,426,000원</td><td>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td></tr> </tbody> </table> <p>* <u>이용자 가정방문, 대면서비스 제공 등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급 산정</u></p> <p>▶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생활지원사 전담업무활동,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u> <p>▶ 복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의거하여 지역수행 기관 내 복무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운영</u> * <u>생활지원사의 근로시간 및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 마련</u> - <u>지역수행기관은 복무점검, 모니터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다하며, 복무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복무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u> - <u>복무점검허위실적,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u> * <u>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중앙 노인돌봄지원기관)' 참고)</u> <p>▶ 정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생활지원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함</u> - <u>단, 지역수행기관 내부규정, 노사합의, 지역적 특성(읍·면, 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정년을 조정할 수 있음</u> * <u>본 사업안내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위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u>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관리 매뉴얼(중앙 노인돌봄지원기관)」 참고</u> 	구분	기본급	비고	생활지원사	1,426,0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기본급 반영 • 생활지원사 업무분장 재량권 확대 • 정년기준 신설
구분	기본급	비고							
생활지원사	1,426,0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p.88	● 기타 (종략)	<p>라. 기타사항</p> <p>(종략)</p> <p>▶ 종사자 임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종사자 임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u> * <u>대상자 :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대체인력 포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신설 및 기준 내용 재구조화 • 종사자 임면보고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 법정의무교육 (종략)	
p. 89	<p>관련 Q&A</p> <p>Q1.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요건 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채용 공고 지원) 시점에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채용 당시에는 근무경력 1년 미만이나 근무시작일('25. 1. 1.) 전에 근무경력을 충족할 것이 예정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채용 가능. 단, 채용 계약 이후 근무경력 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p>Q2.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시 인력 수급 문제로 자격 기준(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난이 심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재공고를 통해 1년 미만자 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결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단, 최종 공고 시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음 등의 안내 필요 시에 급여 등은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인 자와 동일 <p>Q3. 경력이 4년 미만인 전담사회복지사가 근로 계약기간(1년) 중에 경력이 4년 이상이 될 경우 상승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연도 내 경력 4년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본급을 재산정 할 수 있음 <p>Q4.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은 아니나, 노인돌봄이라는 정책적 틀 안에서 유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정함 <p>Q5. 군 의무복무기간을 전담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 가능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관련 : 노인정책과 -5837(2020.12.29.) 「국민신문고 답변」] 	<p>관련 Q&A</p> <p>Q1.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사회복지사 급여 인정 '경력'기준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이외 적용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단, 2026년 이후 근로계약체결(신규포함) 기준으로 적용하면, 기존 경력인정에 대한 근로계약조건보다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함 <p>Q2. 전담사회복지사가 근로계약기간 중 경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건비를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사회복지사가 근로계약기간 중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기본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p>Q3.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은 아니나, 노인돌봄이라는 정책적 틀 안에서 유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정함 <p>Q4. 군 의무복무기간을 전담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3항에 따라 인정 가능 <p>Q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100%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용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등 위탁사업 인력은 위 오각총족이 어려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인정(권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개정에 따른 관련 Q&A 수정
p.90	<p>라. 교육</p> <p>■ 교육기간 : 2025. 1. ~ 2025. 12.</p>	<p>마. 교육</p> <p>● 교육기간 : 2026. 1. ~ 2026. 12.</p>	• 연도 수정
p.90	<p>■ 직무교육</p>	<p>● 직무교육</p> <p>▶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교육</p>	• 연도 및 문구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자 과정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미이수자 - 경력자 과정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자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 사업 및 대상자의 이해,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 신규자 과정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미이수자 - 경력자 과정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자 																																											
p.90	<p>관련 Q&A</p> <p>Q1. 새로운 직군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생활지원사로 근무 후, 2025년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로 직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2025년 광역,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 과정 수강 필요 ■ 2024년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 후, 2025년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직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2025년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 과정 수강 필요 	<p>관련 Q&A</p> <p>Q1. 새로운 직군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생활지원사로 근무 후, 2026년 전담사회복지사로 직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2026년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 과정 수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및 문구 수정 																																										
p.90	<p>【교육 이수 차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전담사회복지사</th> <th rowspan="2">생활 지원사</th> </tr> <tr> <th>광역, 일반 및 중점</th> <th>특화 서비스</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교육</td> <td>14차시</td> <td>22차시</td> <td>20차시</td> </tr> <tr> <td>심화 교육**</td> <td>신규자 29차시 경력자 8차시</td> <td>27차시 8차시</td> <td>11차시 6차시</td> </tr> <tr> <td>소계</td> <td>신규자 43차시 경력자 22차시</td> <td>49차시 30차시</td> <td>31차시 26차시</td> </tr> </tbody> </table>	구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광역, 일반 및 중점	특화 서비스	기본교육	14차시	22차시	20차시	심화 교육**	신규자 29차시 경력자 8차시	27차시 8차시	11차시 6차시	소계	신규자 43차시 경력자 22차시	49차시 30차시	31차시 26차시	<p>【교육 이수 차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전담사회복지사</th> <th colspan="2">생활지원사</th> </tr> <tr> <th>신규자</th> <th>경력자</th> <th>신규자</th> <th>경력자</th> </tr> </thead> <tbody> <tr> <td>필수</td> <td>31차시</td> <td>10차시</td> <td>24차시</td> <td>7차시</td> </tr> <tr> <td>선택</td> <td>—</td> <td>10차시</td> <td>—</td> <td>13차시</td> </tr> <tr> <td>소계</td> <td>31차시</td> <td>20차시</td> <td>24차시</td> <td>20차시</td> </tr> </tbody> </table>	구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신규자	경력자	신규자	경력자	필수	31차시	10차시	24차시	7차시	선택	—	10차시	—	13차시	소계	31차시	20차시	24차시	2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수 차시 수정 및 표 재구성
구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광역, 일반 및 중점	특화 서비스																																											
기본교육	14차시	22차시	20차시																																										
심화 교육**	신규자 29차시 경력자 8차시	27차시 8차시	11차시 6차시																																										
소계	신규자 43차시 경력자 22차시	49차시 30차시	31차시 26차시																																										
구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신규자	경력자	신규자	경력자																																									
필수	31차시	10차시	24차시	7차시																																									
선택	—	10차시	—	13차시																																									
소계	31차시	20차시	24차시	20차시																																									
p.90	(신설)	<p>관련 Q&A</p> <p>Q1. 신규자도 선택교육을 들어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수강 가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A 추가 																																										
p.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군별 교육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p>1) 신규자과정 : 총 43차시(기본 14차시+심화 29차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제</th> <th>과목명</th> <th>교육차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 교육</td> <td rowspan="2">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td> <td>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td> <td>3차시</td> </tr> <tr> <td>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td> <td>6차시</td> </tr> <tr> <td rowspan="2">종사자의 자세</td> <td>사회복지 실천윤리</td> <td>2차시</td> </tr> <tr> <td>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td> <td>3차시</td> </tr> <tr> <td></td> <td>소계</td> <td>14차시</td> </tr> </tbody> </table>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기본 교육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	6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소계	1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군별 교육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사회복지사 <table border="1"> <thead> <tr> <th>신규자</th> <th>경력자</th> </tr> </thead> <tbody> <tr> <td>필수 : 31차시(15.5시간)</td> <td>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필수</th> <th rowspan="2">필수 (생략)</th> <th rowspan="2">선택 (생략)</th> </tr> <tr> <td>-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2차시) - 전담사회복지사의 직무 및 역할(8차시) - 노인 신체건강(3차시) - 노인 정신건강(3차시) - 노년기 영양관리(2차시) - 노년기 보건관리(2차시) - 이용자 상담의 실제(2차시) - 지내예방(2차시) - 종사자 인권과 안전관리(3차시) - 지역사회 지원개발과 관리(2차시) - 사회복지 실천윤리(2차시)</td> </tr> </thead> </table>	신규자	경력자	필수 : 31차시(15.5시간)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필수	필수 (생략)	선택 (생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2차시) - 전담사회복지사의 직무 및 역할(8차시) - 노인 신체건강(3차시) - 노인 정신건강(3차시) - 노년기 영양관리(2차시) - 노년기 보건관리(2차시) - 이용자 상담의 실제(2차시) - 지내예방(2차시) - 종사자 인권과 안전관리(3차시) - 지역사회 지원개발과 관리(2차시) - 사회복지 실천윤리(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목 등 수정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기본 교육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	6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소계	14차시																																											
신규자	경력자																																												
필수 : 31차시(15.5시간)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필수	필수 (생략)	선택 (생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2차시) - 전담사회복지사의 직무 및 역할(8차시) - 노인 신체건강(3차시) - 노인 정신건강(3차시) - 노년기 영양관리(2차시) - 노년기 보건관리(2차시) - 이용자 상담의 실제(2차시) - 지내예방(2차시) - 종사자 인권과 안전관리(3차시) - 지역사회 지원개발과 관리(2차시) - 사회복지 실천윤리(2차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신규자	경력자		
심화 교육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2차시	선택	필수 : 31차시(15.5시간)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사례관리 - 노인상담기법 이해와 활용(내리티브 5차시) - 노인상담기법 이해와 활용(동기강화상담 5차시) - 노인상담기법 이해와 활용 (인지치료상담 4차시) - 노인상담기법 이해와 활용 (강점관점상담 4차시) • 특화지원 서비스 - 고위험노인 상담 및 사례관리(4차시) - 집단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2차시) - 개별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2차시) •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2차시) - 영양서비스 실제(2차시) - 가사지원서비스 이해 및 실제(2차시) - 동행지원서비스 이해 및 실제(2차시) • 인권 및 안전 - 종사자의 자기돌봄(2차시) • 기타 직무 - 스마트 돌봄(2차시) -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무지식(4차시) 	
		학대예방	2차시					
		치매예방	2차시					
	노인상담	내리티브 노인상담의 이해	5차시					
		사례관리의 실제	4차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4차시					
		스마트 돌봄	2차시					
	ICT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관계성장을 위한 자기이해	2차시					
	종사자의 자기돌봄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지식	4차시					
	노무 실무의 이해	소개	29차시					
p.91	2) 경력자과정 : 총 22차시(기본 14차시 + 심화 8차시 이상)				- 전담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목 등 수정 	
	기본 교육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선택 (생략)	신규자 필수 : 31차시 (15.5시간)	경력자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제공절차의 이해	6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소개	14차시				
	심화 교육	노인정책	노인복지의 이해	3차시		선택 (생략)	필수 (생략)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2차시				
			학대예방	2차시				
			치매예방	2차시				
		상담	내리티브 노인상담의 이해	5차시				
	사례관리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이해		7차시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		5차시				
		인지치료 상담의 이해		4차시				
		프로그램	사례관리의 실제	4차시				
		프로그램	고위험 노인의 사례관리	4차시				
	조직·실무	노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와 인지기능 저하의 이해	4차시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4차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4차시				
		이름다운 직장문화 만들기	2차시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무지식	4차시					
	지역사회 연계 및 ICT	관계성장을 위한 자기이해	2차시					
		스마트 돌봄	2차시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 차시	신규자 필수 : 31차시 (15.5시간)	경력자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특화서비스의 이해	특화서비스 집단별 접근방법 특화서비스 행정실무 특화서비스 집단프로그램의 실제	2차시 2차시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실천윤리(2차시) • 기타 직무 - 스마트 돌봄(2차시) -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무지식(4차시) -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리(2차시) • 선임 과정 - 사례관리 이해와 실제(2차시) - 관계형성 및 조직관리(2차시) 	
			전체 과목 중 8차시 이상 수강				
p.91			심화교육 8차시 이상 수료 예시			<p>▣ (경력자) 선택교육 10차시 이상 수료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 8차시 수강 : 인지치료 상담의 이해(4차시)+스마트 돌봄(2차시)+특화서비스 행정실무(2차시) - (예시2) 11차시 수강 :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5차시)+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무지식(4차시)+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자 예시 추가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과정 삭제
			1) 신규과정 : 총 49차시(기본 22차시+심화 27차시)				
	기본 교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특화서비스 집단별 접근방법	2차시			
			특화서비스 집단프로그램의 실제	2차시			
			특화서비스 행정실무	2차시			
			사례관리의 실제	4차시			
			노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와 인지기능 저하의 이해	4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소계	22차시			
		심화 교육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학대예방 치매예방	2차시 2차시 2차시		
			노인상담	내러티브 노인상담의 이해	5차시		
			사례관리	고위험 노인의 사례관리	4차시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4차시		
			자원연계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종사자의 자기돌봄	관계성장을 위한 자기이해	2차시		
			노무 실무의 이해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지식	4차시		
			소계	27차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2) 경력자과정 : 총 30차시(기본 22차시+ 심화 8차시 이상)			(삭제)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과정 삭제
기본 교육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특화 서비스의 이해	특화서비스 집단별 접근방법	2차시	
			특화서비스 집단프로그램의 실제	2차시	
			특화서비스 행정실무	2차시	
			사례관리의 실제	4차시	
			노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와 인지기능 저하의 이해	4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소계		22차시	
심화 교육	노인정책	노인복지의 이해		3차시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2차시	
		학대예방		2차시	
		치매예방		2차시	
	상담	내리티브 노인상담의 이해		5차시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이해		7차시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		5차시	
	사례관리	인자치료 상담의 이해		4차시	
	프로그램	고위험 노인의 사례관리		4차시	
		집단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4차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4차시	
	조직·실무	아름다운 직장문화 만들기		2차시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무지식		4차시	
		관계성장을 위한 자기이해		2차시	
	지역사회 연계 및 ICT	스마트 돌봄		2차시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		6차시	
	전체 과목 중 8차시 이상 수강				
	심화교육 8차시 이상 수료 예시			(삭제)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과정 삭제
	- (예시1) 8차시 수강 : 인자치료 상담의 이해(4차시)+ 스마트 돌봄(2차시)+학대예방(2차시)				
	- (예시2) 11차시 수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6차시)+내리티브 노인상담의 이해(5차시)				
p.92	- 생활지원사 1) 신규자 과정 : 총 31차시(기본 20차시+심화 11차시)			- 생활지원사	• 교육과목 등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신규자	경력자		
기본 교육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필수 : 24차시(12시간)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필수 (생략) 선택 (생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		2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상담의 실제		2차시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2차시				
		학대예방		2차시				
		치매예방		2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아름다운 직장문화 만들기		2차시				
		소계		20차시				
	심화 교육	노인정책	노인복지의 이해	3차시				
		상담	인지치료 상담의 이해	4차시				
		지역사회연계 및 ICT	스마트 돌봄	2차시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소계		11차시				
* 퇴원후돌봄군을 지원하는 돌봄제공인력의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 가능								
p.92	2) 경력과정 : 총 26차시(기본 20차시+심화 6차시)				- 생활지원사		• 교육과목 등 수정	
기본 교육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3차시	신규자 필수 : 24차시 (12시간) 필수 (생략)	경력자 필수+선택 : 20차시(10시간) 필수 (생략) 선택 (생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의 이해		2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상담의 실제		2차시				
	고위험 노인관리	자살예방		2차시				
		학대예방		2차시				
		치매예방		2차시				
	종사자의 자세	사회복지 실천윤리		2차시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관리		3차시				
		아름다운 직장문화 만들기		2차시				
		소계		20차시				
심화 교육	(A형)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실제		4차시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2차시				
	(B형) 노인상담	인지치료 상담의 이해		4차시				
		관계성장을 위한 자기이해		2차시				
	(C형) 노년기 정신건강	노년기 정신건강의 문제와 인지기능 저하의 이해		4차시				
		노인돌봄 기술과 정신건강 자기돌봄의 이해		2차시				
	(D형) 자원연계 및 ICT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이해		2차시				
		스마트 돌봄		2차시				
		노인돌봄 기술과 자기돌봄의 이해		2차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구분	주제	과목명	교육차시																					
		(E형) 사례관리 심화	고위험 노인의 사례관리 노인 의사소통 및 상담	4차시 2차시																					
		심화교육 A형 ~ E형 중 택 1 (6차시)																							
p.92	(신설)				<p>▣ (경력자) 선택교육 10차시 이상 수료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 치매예방(2차시)+노인상담기법 이해와 활용 (강점관점(4차시)+고위험노인 상담 및 사례관리(4차시)) - (예시2) 노년기 보건관리(2차시)+이용자 상담의 실제(2차시)+개별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2차시)+종사자의 자기돌봄(2차시)+스마트 돌봄(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자 수료 예시 추가 																			
p.93	<p>■ 역량강화교육 (중략)</p>				<p>● 역량강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u> (중략) ▶ <u>교육내용 : 사례관리, 상담기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 홍보, 행정 실무(회계, 서무) 등</u> * <u>전담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중앙노인돌봄지원 기관) 참고하여 교육 운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추가 																			
p.124	<p>■ 심리지원교육 (중략)</p>				<p>● 심리지원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교육</u> (중략) ▶ <u>교육내용 : 소진 예방(스트레스 관리,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감정 관리 및 회복탄력성,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추가 																			
p.99	<p>■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 이상으로 편성 ※ 광역지원기관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외 				<p>●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예산편성기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 이상으로 편성 권고 ※ 광역지원기관은 제외 - <u>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사업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기준 완화 • 퇴원환자 관련 내용 추가 																			
p.9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내역</th> </tr> </thead> <tbody> <tr> <td>광역 지원 기관</td> <td>인건비</td> <td colspan="2">-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선임 전담사회복지사 수당,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td> </tr> <tr> <td></td> <td>운영비</td> <td colspan="2">-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검증비</td> </tr> <tr> <td></td> <td>사업비</td> <td colspan="2">- 수행기관 관리, 교육지원, 모니터링 진행, 평가 및 컨설팅 등</td> </tr> <tr> <td>수행</td> <td>인건비</td> <td colspan="2">-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광역 지원 기관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선임 전담사회복지사 수당,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검증비			사업비	- 수행기관 관리, 교육지원, 모니터링 진행, 평가 및 컨설팅 등		수행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내역 일부 수정
구분	내역																								
광역 지원 기관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선임 전담사회복지사 수당,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검증비																							
	사업비	- 수행기관 관리, 교육지원, 모니터링 진행, 평가 및 컨설팅 등																							
수행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구분	내역																						
		광역 지원 기관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u>선임수당</u> ,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검증비																					
			사업비	- 지역수행기관 관리, 교육지원, 모니터링 진행, 평가 및 컨설팅 등																					
		지역 수행	인건비	- 기본급,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u>선임수당</u>																					

페이지	2025년 안내			비고																														
	구분	내역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선임전담 사회복지사 수당, 선임생활지원사 수당,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기관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감사비, 회계검증비																															
	기관	사업비	- 직접서비스사업비 : 안전확인 사업비, 사회참여사업비, 생활 교육사업비, 일상생활지원사업비 - 연계서비스사업비 : 진행비 - 특화서비스사업비 : 개별상담비,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집단 활동비, 사례발굴비, 업무협력비 - 교육사업비																															
p.99	● 예산집행기준 (종략) ※ 단,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인건비의 5% 이내에서 운영비·사업비로 전용 가능.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 이상 편성·집행 필수(광역지원기관은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서 제외)	▶ 예산집행기준 (종략) ※ 단,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인건비의 5% 이내에서 운영비·사업비로 전용 가능		• 예산집행기준 완화																														
p.100	- (인건비) •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td> <td>2,400,000원</td> <td rowspan="4">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td> <td>2,286,0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td> <td>2,181,000원</td> </tr> <tr> <td>생활지원사</td> <td>1,308,000원</td> </tr> </tbody> </table> •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복리후생후생 수당 등 지급 가능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2,400,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	2,286,0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181,000원	생활지원사	1,308,000원	- (인건비) •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본급</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td> <td>2,538,700원</td> <td rowspan="8">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td> <td>2,475,4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td> <td>2,411,5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td> <td>2,366,5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td> <td>2,324,300원</td> </tr> <tr> <td>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td> <td>2,281,800원</td> </tr> <tr> <td>생활지원사</td> <td>1,426,000원</td> </tr> </tbody> </table> • 총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복리후생 수당, 선임수당, 고위험 담당 수당 등 지급 가능 * <u>야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u> ※ 수당 지급 금액은 전년도 지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	2,538,7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2,475,4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2,411,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2,366,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324,3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	2,281,800원	생활지원사	1,426,000원		• 전담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확대 • 수당내역 및 예시 추가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2,400,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4년 미만)	2,286,0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181,000원																																	
생활지원사	1,308,000원																																	
구분	기본급	비고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5년 이상)	2,538,7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2,475,4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2,411,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2,366,5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2,324,300원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 미만)	2,281,800원																																	
생활지원사	1,426,000원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100	<p>- (운영비)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의 경우 우편료, 전화요금은 집행 가능 	<p>- (운영비)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공요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요금을 별도 분리 및 증빙 가능한 경우 집행 가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집행기준 완화
p.100	<p>-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서비스사업비(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사업비, 특화 서비스사업비, 종사자 교육비로 집행 	<p>-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직접서비스사업비(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연계서비스 사업비, 종사자 교육비로 집행</u> • <u>특화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운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내역 추가(특화지원)
p.101	<p>■ 유의사항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진행하며,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형태 지원 불가(특화서비스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제외) 	<p>● 유의사항 (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진행하며, <p>(종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금 형태 지원 불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서비스 관련 문구 삭제
p.105	<p>라. 사업운영 평가</p> <p>■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품질 강화 및 관리를 위한 평가 시행 ● 종합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체계 마련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수범사례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효과적인 사업지원방안 모색 <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기) 3년 내 1회 ● (평가대상) 3년 연속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 ● (평가내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성과 등 ● (평가방식) 정성평가, 정량평가, 혼합평가 ※ 일부 지표는 매년 실시되는 자자체 지도점검 및 광역지원기관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인센티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 2025년은 종합평가 시범사업으로 연장 운영됨 ■ 평가기간·지표·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p>라. 성과관리</p> <p>●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시행</u> ▶ <u>서비스 운영모델 개발(보급)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 체계 마련 필요</u>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운영 우수기관 평가를 통한 수범사례 발굴·분석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u> ▶ <u>수범사례분석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효과적인 사업지원방안 모색</u> ▶ <u>지역수행기관 사업운영 성과지지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사업운영 참여촉진</u>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u>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만족도조사</u>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효과성 평가</u> ▶ <u>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 자자체 평가</u> <p>● 각 성과관리 계획 별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내용 추가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 수행기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범사례 발굴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		
p.106	(신설)	<p>사. 목적외 사용금지 등</p> <p>● 본 사업의 종사자, 예산 및 후원금품 등 모든 공직·민간 자원을 본 사업안내에 명시된 목적 외 대상자(장기요양 이용자 등)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 및 유치 목적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외 사용금지 내용 추가
p. 107	V.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매뉴얼 (신설)	<p>V.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p> <p>1. 2026년 중점 제공 서비스 (중략)</p> <p>2. 제공서비스 목적과 영역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매뉴얼 세부내용 삭제 (별도 서비스 제공매 뉴얼 참조)
	VI. 특화서비스 (중략)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지원서비스 통합 개편에 따라 해당 파트 삭제(별도 매뉴얼 배포)
p.121	(신설)	VI.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중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설에 따라 해당 파트 추가
p.160	VII. 불임 서식 (신설)	VII. 불임 서식 <u>〈서식 제5호〉 특화지원 서비스 심화조사지(선별조사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신설
p.163	(신설)	<u>〈서식 제6호〉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심화조사 및 서비스 상담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신설
p.167	〈서식 제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	<u>〈서식 제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및 내용 수정
p.168	〈서식 제6-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대상)	<u>〈서식 제8-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대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169	〈서식 제6-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대상제외)	<u>〈서식 제8-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대상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170	〈서식 제6-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종결)	<u>〈서식 제8-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결정 통지서(종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171	〈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u>〈서식 제9-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p.172	〈서식 제7-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 안내서(이용대기자)	<u>〈서식 제9-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예정) 안내서(이용대기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번호 수정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p.173	〈서식 제7-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일반돌봄군)	〈서식 제9-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일반돌봄군)	• 서식 번호 수정
p.175	〈서식 제7-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중점돌봄군)	〈서식 제9-4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중점돌봄군)	• 서식 번호 수정
p.177	(신설)	〈서식 제9-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퇴원후돌봄군)	• 서식 신설
p.179	〈서식 제8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지	〈서식 제10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지	• 서식 번호 수정
p.180	〈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	• 서식 번호 수정
p.181	〈서식 제10-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신청서	〈서식 제12-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신청서	• 서식 번호 수정
p.182	〈서식 제10-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처리서	〈서식 제12-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처리서	• 서식 번호 수정
p.183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서식 제1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 서식 번호 및 내용수정 (25. 2. 수정사항 반영)
p.184	〈서식 제12호〉 이의신청서	〈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	• 서식 번호 수정
p.185	〈서식 제1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서식 제1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서식 번호 수정
p.191	〈서식 제14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표준 계약서 양식	〈서식 제16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표준 계약서 양식	• 서식 번호 수정
p.195	〈서식 제15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서식 제17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 서식 번호 수정
p.196	〈서식 제16-1호〉 표준근로계약서-전담사회복지사	〈서식 제18-1호〉 표준근로계약서-전담사회복지사	• 서식 번호 및 내용수정
p.199	〈서식 제16-2호〉 표준근로계약서-생활지원사	〈서식 제18-2호〉 표준근로계약서-생활지원사	• 서식 번호 및 내용수정
p.202	(신설)	〈서식 제18-3호〉 표준근로계약서-돌봄제공인력	• 서식 신설
p.205	〈서식 제17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9호〉 보안서약서	• 서식 번호 수정
	〈서식 제18호〉 특화서비스 신청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19호〉 특화서비스 초기상담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0호〉 특화서비스 사정척도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1호〉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서 및 재사정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2호〉 특화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3호〉 특화서비스 중지 신청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4-1호〉 특화서비스 종결 신청서	(삭제)	• 서식 삭제

페이지	2025년 안내	2026년 안내	비고
	〈서식 제24-2호〉 특화서비스 종결 처리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5호〉 특화서비스 사례(상담) 기록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6호〉 특화서비스 집단 활동 일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7호〉 특화서비스 집단 활동 강사 일지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8호〉 특화서비스 자문요청·결과보고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29호〉 특화서비스 사례실무회의록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30호〉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변경 신청서	(삭제)	• 서식 삭제
	〈서식 제31호〉 특화서비스 집단 프로그램 계획서	(삭제)	• 서식 삭제
p.206	(신설)	〈서식 제20호〉 모니터링-서비스 제공기관 기록지 <u>(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참고)</u>	• 서식 신설
p.207	(신설)	〈서식 제21호〉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돌봄제공 인력풀 관리대장(참고)	• 서식 신설
p.208	(신설)	〈서식 제22호〉 돌봄제공인력 업무일지(필요시)	• 서식 신설
p.209	(신설)	〈서식 제23호〉 돌봄제공인력 근무편성표	• 서식 신설
p.210	(신설)	〈서식 제24호〉 돌봄제공인력 근태관리서	• 서식 신설